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210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70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21087 판결

전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5. 6. 9.

판결 선고2015. 8. 18.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80,352원 및 그 중 85,930,547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2014. 10.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 D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95,876,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원고에게 95,876,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SC제일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0. 5. 14.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4. 2. 27.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25. SC제일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85,976,4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14. 3. 14.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9,000만 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한 온천3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E가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2014. 3.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온천3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후 실제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C, D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E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C,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4. 3. 14. 국민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 같은 날 부산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각 해지한 사실, 또한 피고 E가 2014. 3. 17.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E의 소유였던 G건물 A동 502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3. 21.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았는바, 피고 C, D와 피고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매매형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 ② 피고 C, D는 2014. 3. 10.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성급히 피고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E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해지한 금원 및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 C,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금원이 모두 위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 E는 잔금 7,000만 원 중 2014. 3. 27. 3,000만 원, 2014. 3. 25.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E의 약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9,000만 원(2014. 3. 14.경 시가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95,876,3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95,876,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95,876,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민경

별지